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00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12일
발 의 자: 김 경, 김규남, 남창진,
박강산, 박수빈, 박승진,
박철성, 서상열, 아이수루,
, 유만희, 유정희, 이원형,
이종환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2024년 5월 20일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시행됨에 따라 ‘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’의 입장료와 사용료에 대한 감면 대상에 임산부 본인을 추가하여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빠른 회복을 위해 시행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9조(입장료) 3항의 입장료 감액 대상에 임산부 본인에 대한 면제 신설
- 나. 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에 임산부 본인에 대한 감면 내용 신설, 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에 임산부 본인에 대한 감면 내용 신설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에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5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
: 면제

제10조 제1호 개인연습사용료 감면과 제2호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에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을 추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(입장료)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9조(입장료) ③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 : 면제
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1.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 가. 18세 이하인 자(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65세 이상인 자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가. 18세 이하인 자(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, 65세 이상인 자,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

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의 50 감액

나.~바.(생략)

2.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.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.

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산부 본인 : 100분의 50 감액

나.~바.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가.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,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, 「국민기초생활

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: 100분
의 50 감액

나.~사.(생략)

3. (생략)

가.~나. (생략)

4. (생략)

5. (생략)

가.~사.(생략)

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, 「서울
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
관한 조례」에 따른 임신부 본인
: 100분의 50 감액

나.~사.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가.~나. (현행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5. (현행과 같음)

가.~사.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9조(입장료)	○	임산부 대상 입장료 면제규정에 따른 세입감소 발생
2	제10조(사용료의 감면)	○	임산부 대상 사용료 50%감면규정에 따른 세입감소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임산부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(100% 감면)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9조)
- 임산부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50%감면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10조)

나. 전제

- (감면대상) 서울시 임산부를 총 39,358명¹⁾으로 전제하며 이를 활용해 임산부 비율을 0.42%로 산정
⇒ 임산부 수는 추계기간 내 동일한 수를 전제하여 추계
- (수입액) 2023년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수입 기준으로 추계
- (발생기간) 2025년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매년 소요됨을 전제
※ 추계기간(2025~2029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5년~2029년)

라. 방법

- 서울시 관광체육국 제공자료 활용 등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비용 = 29,960천원(연평균 5,992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지출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수입	○임산부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9조)	△925	△925	△925	△925	△925	△4,625
	○임산부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10조)	△5,067	△5,067	△5,067	△5,067	△5,067	25,335
	소계(b)	△5,992	△5,992	△5,992	△5,992	△5,992	△29,960
□ 총 비용(a-b)		△5,992	△5,992	△5,992	△5,992	△5,992	△29,96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1)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(23.12월말) 9,384,739명 / 임산부 수 39,358명('23년 출생아수 기준)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당관 오 희 선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임산부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9조)
- 임산부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50%감면 규정에 따른 세입감소액(안 제10조)

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29,960천원(연평균 5,992천원)

$$\text{산출방식} = \sum_{i=1}^5 (\text{임산부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에 따른 연평균 세입감소액})_i$$

i = 비용추계 연차(2025년~2029년)

나. 임산부 대상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에 따른 연평균 세입감소액 = 5,992천원

= 입장료 연평균 수입감소액 + 사용료 연평균 수입감소액

= 925천원 + 5,067천원

※ 시설별 세부추계 내역²⁾

(단위 : 천원)

시설명	구분	2023년 수입액	임산부비율	감면비율	수입감소예상액
잠실종합운동장	소계	1,826,858			4,135
	입장료	142,443	0.42%	100%	598
	사용료	1,684,415	0.42%	50%	3,537
목동운동장	소계	10,826			45
	입장료	10,826	0.42%	100%	45
	사용료	-	0.42%	50%	-
서울월드컵경기장	소계	3,421			14
	입장료	3,421	0.42%	100%	14
	사용료		0.42%	50%	
고척스카이돔	소계	729,680			1,535
	입장료	1,260	0.42%	100%	5
	사용료	728,420	0.42%	50%	1,530
장충체육관	소계	62,220			261
	입장료	62,220	0.42%	100%	261
	사용료	-	0.42%	50%	-

2) 세부추계내역의 경우 세부내역에 대한 내용으로 천원이하 금액 반올림 표시에 따라 전체금액(5,992천원) 수치와 일부 차이 날 수 있음
⇒ 참고로 전체금액의 경우 시설 전체 수입액 합의 0.42%에 해당하는 수에서 해당 감면비율(100% 또는 50%)을 곱하여 산출함